

행 정 자 치 부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119 감염관리실 구축사업 계획 수립 소홀 등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관 련 자 강원도 소방본부 ○○○○과

지방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 ○○○는 2016. 1. 3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강원도 소방 본부 ○○○○과에서 「119○○○ 감염관리실」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.

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제26조, 그리고 국민안전처 119○○과-0000(2015. 00. 00) 「2016년 119 구급대 감염관리 추진계획 알림」에 따라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○○소방서(○○, ○○센터) 등 38개의 감염관리실을 총 사업비 3,154,000,000원(1실 83,000,000원)으로 설치하였다.

1. 119 감염관리실 구축 계획수립 소홀

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119 ○○○ 감염관리실 설치를 위해 2016년 2월 구축계획을 수립 하면서 ‘강원도 일상감사 운영 규정’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 하였다.

그러나 119 ○○○ 감염관리실은 실내형 5실과 실외형 33실 등으로 실내·외에 따라 도입가격이 상이하고 또한, 도입장비가 컨테이너 하우스 등 27종임에도

이에 대한 세부장비의 가격 산출없이 1실 88,000,000원으로 일괄 동일하게 적용하여 ‘일상감사’를 의뢰하는 등 계획수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2. 검수·검사 업무 부실

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119 ○○○ 감염관리실 설치를 위해 2016년 2월 입찰공고 시 ‘입찰제안규격서’에 ‘7. 중간검사 및 납품검사’ 중 ‘7.4 계약자는 감염관리실이 완료되면 일정시간 시험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

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소독시험성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, ~ ~ 이상이 없을시 납품검사를 완료된 것으로 본다.’로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, ○○소방서 ○○ 및 ○○센터의 감염관리실이 2016년 7월 5일 착공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‘소독시험성적서’를 발급 받지 않고 검수를 승인하여 약 8천 3백만원을 각각 선 집행하는 등 검수·검사 등 납품검사 업무를 부실히 하였다.

또한, 119 ○○○ 감염관리실 구축 수행업체인 ‘○○의료기’는 ‘제안서’에 도입장비에 대하여 제품 모델명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

기 구축 완료된 ○○소방서의 ○○ 및 ○○센터의 36개소에 일부 감염관리실에 일부 제품에 대하여 다른 장비를 도입·설치하였음에도 80% 검수가 될때까지도 확인치 못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·감독업무를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향후 사업 추진시 실내·외 형의 세부 자재 가격 등을 비교·검토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검수·검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